



#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하천)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

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석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9년 08월 12일

서 산 시 장

## 1. 시설결정(변경) 내용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		연장 (km)	폭원 (m)	면적 (㎡)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기점	종점	주요 경과지					
신설	하천1	석남천	지방하천	서산시 예천동 243-3	서산시 석남동 395	-	1.34	24 ~ 30	61,967		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내 용	변경사유
하천1	석남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장 : 1.34km</li> <li>폭원 : 24~30m</li> <li>면적 : 61,967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하천법」 제27조에 따른 석남천(지방하천)의 실시시설계 완료에 따라 하천법」 제32조1항5호에 의거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-방재시설 : 하천]을 결정하고자 함</li> </ul>

2. 관련고시 : 충청남도 고시 제2018 - 154호

3. 지형도면 : 게재생략

4. 지형도면 열람방법

-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개발과(041-635-7572), 서산시청 도시과(041-660-3201)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하며,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서 열람가능합니다.